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 <개정 2023. 6. 30.>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 적지 않습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

신청인	상호(법인명)	근로복지공단	
	소재지	44428 울산 중구 종가로 340	전화번호 010-123-4567
	우편물수령지	44428 울산 중구 종가로 340	전자우편주소 abc@komwel.or.kr
	근로자수	1	
	대표자	김근로	주민등록번호 123456-1234567
	사업자등록번호	123-45-56789	법인등록번호 110111-1111111
	사업 개시일(개업연월일)	2022년 1월 1일	
	업태 산재고용보험업	종목 산재고용보험업 (주생산업) 산재고용보험운영	업종코드

보험가입 신청내용	보험료산정 기준보수액	5 등급(2,860,000 원)
	사업의 내용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업

신청일 현재 임금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 피보험자격 취득 여부 예 [] 아니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보험가입자)

[]보험사무대행기관

2022년 1월 25일

김근로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선택)

본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안내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 등을 위해 우편 또는 휴대전화 등으로 관련 정보 등을 수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관련 제도 홍보자료 제공 및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 등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신청인 성명,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기간: 해당 보험관계의 해지 후 1년
- 동의 거부 권리 등 안내: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단이 제공하는 산재보험 제도 안내 및 관련 정보 등은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안함

신청인

김근로

(서명 또는 인)

※ 처리사항

보험관계 성립일	승인 여부	[]승인 []불승인
보험관리번호		

담당직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 2. 주민등록표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말합니다)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을 갈음합니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란의 제1호 및 제2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해당 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김근로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보험료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월별 기준보수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기준보수액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고용노동부(135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매월 근로복지공단에서 부과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서를 발송하며,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료를 연속해서 6개월 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보험관계가 소멸되고, 소멸일 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납부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법」 제69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15조의4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사람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기준보수액(등급)은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이를 변경할 수 없으며, 다음 보험연도에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12월 20일까지 공단에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기준보수액(등급) 변경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보수액(등급)이 적용됩니다.
- 「고용보험법」 제18조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경우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격을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자격을 동시에 취득 또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일용근로자,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5조의3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폐업사유는 다음과 같으며, 위탁·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폐업 등의 사유로 폐업 시 실업급여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지속된 경우
 -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이하 "기준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기준월이 속하는 연도 직전연도 중 같은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월이 속하는 연도 직전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20 이상 감소한 경우
 - 기준월의 월평균 매출액과 기준월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사업조정을 신청한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폐업한 경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되었거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폐업 지원을 받은 농어업인이 더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폐업한 경우
 - 예상하기 어려운 대규모의 태풍, 홍수, 대설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폐업한 경우
 - 부모나 동거하고 있는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30일 이상 직접 간호해야 하고, 간호하는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사업을 운영하게 할 수 없어 폐업한 경우
 - 의사의 소견서 등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영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폐업한 경우
 - 부양해야 하는 배우자나 친족과 동거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한 경우로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출퇴근을 하는 데에 3시간 이상이 걸려 폐업한 경우
 - 병역복무를 위해 징집되거나 소집되어 폐업한 경우
 - 그 밖에 통상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경우에도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폐업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 1년 이상 가입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210일까지 기초일액의 60%를 실업급여로 지급합니다.

위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김근로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근로자 수” 란에는 신청서 제출일 당시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수를 적습니다.
- “사업개시일” 란과 “업태와 종목” 란에는 사업장등록증 상의 개업 연월일, 업태와 종목을 적습니다.
- “보험료산정 기준보수액” 란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3항·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단위 보수액 중 자영업자가 선택한 등급과 금액을 적습니다.
- “사업의 내용” 란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자영업자가 하고 있는 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적습니다.
- “신청일 현재 임금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 피보험자격 취득 여부” 란에는 고용보험법상 근로자로 피보험자격 취득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적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확인서

가입신청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1. 다음은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관련하여 알아두셔야 할 사항입니다. 가입 전에 반드시 읽어보시고 충분히 이해하신 후에 □에 √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래의 내용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는 경우, 실업급여 등 관련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가입 및 보험료납부 등 관련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으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p>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대한 확인과 이해</p> <p>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영업자는 누구나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보유(고유번호증만 가진 경우에는 가입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22. 7. 1.부터 고유번호증만을 보유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영업자 중 가정 어린이집과 시설의 대표자와 기관의 장이 동일한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어린이집 및 노인장기요양 기관에 한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 민간어린이집 및 노인장기요양기관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이후 시설의 대표자와 기관의 장이 상이하게 되는 경우 소멸대상으로 해당조건 변동이 있는 경우 공단에 소멸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임대업자, 5인 미만 농업·임업·어업 개인사업자*, 소규모 건설공사*, 가구 내 고용 활동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단, *사업은 소속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로 임의가입한 경우에 한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 만 65세 이후에 가입하시는 경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
----------	--	---

2	<p>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시 혜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업급여: 1년 이상 가입 후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 시 실업급여 지급 - 직업능력개발사업: 사업 운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비 일부 지원 	□
----------	---	---

3	<p>자영업자 고용보험 등급별 월별 보험료 (단위: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10%;">등급</th> <th style="width: 20%;">기준보수</th> <th style="width: 20%;">고용안정·직능 (0.25%)</th> <th style="width: 20%;">실업급여 (2%)</th> <th style="width: 20%;">합계 (2.25%)</th> </tr> </thead> <tbody> <tr><td>1등급</td><td>1,820,000</td><td>4,550</td><td>36,400</td><td>40,950</td></tr> <tr><td>2등급</td><td>2,080,000</td><td>5,200</td><td>41,600</td><td>46,800</td></tr> <tr><td>3등급</td><td>2,340,000</td><td>5,850</td><td>46,800</td><td>52,650</td></tr> <tr><td>4등급</td><td>2,600,000</td><td>6,500</td><td>52,000</td><td>58,500</td></tr> <tr><td>5등급</td><td>2,860,000</td><td>7,150</td><td>57,200</td><td>64,350</td></tr> <tr><td>6등급</td><td>3,120,000</td><td>7,800</td><td>62,400</td><td>70,200</td></tr> <tr><td>7등급</td><td>3,380,000</td><td>8,450</td><td>67,600</td><td>76,050</td></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보수는 실제 소득과 무관하게 본인 희망에 따라 선택 ※ 기존 선택한 기준보수를 다음연도에 변경하려는 경우 직전년도 12월 20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음 ※ 성립·소멸시 보험료는 일할 계산됨 	등급	기준보수	고용안정·직능 (0.25%)	실업급여 (2%)	합계 (2.25%)	1등급	1,820,000	4,550	36,400	40,950	2등급	2,080,000	5,200	41,600	46,800	3등급	2,340,000	5,850	46,800	52,650	4등급	2,600,000	6,500	52,000	58,500	5등급	2,860,000	7,150	57,200	64,350	6등급	3,120,000	7,800	62,400	70,200	7등급	3,380,000	8,450	67,600	76,050	□
등급	기준보수	고용안정·직능 (0.25%)	실업급여 (2%)	합계 (2.25%)																																						
1등급	1,820,000	4,550	36,400	40,950																																						
2등급	2,080,000	5,200	41,600	46,800																																						
3등급	2,340,000	5,850	46,800	52,650																																						
4등급	2,600,000	6,500	52,000	58,500																																						
5등급	2,860,000	7,150	57,200	64,350																																						
6등급	3,120,000	7,800	62,400	70,200																																						
7등급	3,380,000	8,450	67,600	76,050																																						

4 실업급여 수급 가능기간 및 구직급여액

- 고용보험 가입기간(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 지급
 - ※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
- 구직급여일액은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의 **60%**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월 기준보수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월 급여액	1,092,000	1,248,000	1,404,000	1,560,000	1,716,000	1,872,000	2,028,000

※ 실제 실업급여 수령액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음, 폐업 요건 등의 상세 확인 후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폐업(사업자등록증 폐지,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음)
 - 1년이상 고용보험 가입
 - 적극적 재취업(재창업) 노력
 - 폐업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실업급여 수급
 -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 (6번 항목 확인해 주세요)
- ※ 고용보험료 체납 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고, 실업급여 미지급시에도 보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6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불가피한 폐업의 기준 및 증빙자료

- 가. 적자지속·매출액 감소 등 경영악화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여 폐업한 경우
- 폐업 이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지속된 경우
 - 폐업 이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전년동기 또는 전년도 전체)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20% 이상 감소한 경우
 - 폐업 이전 3분기 연속 월평균 매출액이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 【 증빙자료 】 —

- ◆ 복식부기 의무자: ①관련 연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회계사 확인과 함께 제출)
②월별손익계산서 ③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 간편장부 대상자: ①관련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면세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②매출총계장원장 ③6개월 월별 경비(필요경비 또는 주요경비) 증빙

- 나. 대형마트, SSM 등 대기업의 입점·확장 등으로 피해를 입을 것이 우려되어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을 신청한 경우

— 【 증빙자료 】 —

- ◆ 사업조정신청 시기, 신청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다. FTA로 피해를 입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되었거나 폐업지원금 지급결정을 받은 경우



— 【 증빙자료 】 —
◆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통지서 또는 폐업지원금 지급 결정서 사본

라. 예상하기 어려운 대규모 자연재해로 폐업한 경우

— 【 증빙자료 】 —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받은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마. 부모 또는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직접 간호하여야 하여 폐업한 경우

— 【 증빙자료 】 —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진단서, 의사소견서 등

바. 본인의 질병·부상 등으로 영업을 수행할 수 없어 폐업한 경우

— 【 증빙자료 】 —
◆ 진단서, 의사소견서 등

사. 배우자 등과의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여 출퇴근에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 【 제출서류 】 —
◆ 주민등록 등·초본, 배우자 등의 재직증명서, 본인이 친족을 부양해야하는 사유에 대한 진술서

아. 병역복무를 위해 징집되거나 소집되는 경우

— 【 증빙자료 】 —
◆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계약·위탁기간 만료로 폐업한 경우

— 【 다음 요건 】 —
1) 수탁업체의 의사에 반해 위탁업체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2) 해당 계약에 대한 사업체의 의존도가 매우 높음
3)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여 계약만료로 인한 폐업이 예측 불가능했던 경우
- 계약이 2회 이상 갱신(재계약)되어, 이후에도 계약이 계속적으로 갱신될 것이라 기대할 수 있었던 경우
- 위탁기간이 정해져있다고 해도 실제적으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차. 그 밖에 통상의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폐업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예) 프랜차이즈 본사의 일방적 가맹 해지, 토지수용 등

— 【 증빙자료 】 —
◆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7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폐업사유

- 법령을 위반하여 허가 취소를 받거나 영업 정지를 받음에 따라 폐업한 경우
- 방화 등 피보험자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폐업한 경우



8 고용보험료 미납 시 불이익

- 6개월 연속하여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보험관계가 자동으로 소멸됨
- 실업급여 수급시 가입기간별 미납 횟수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됨 단, 미납 보험료(연체금 포함) 완납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구 분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는 체납횟수
가입기간	1년 이상 ~ 2년 미만	1회
	2년 이상 ~ 3년 미만	2회
	3년 이상	3회

9 자영업자 직업능력개발 지원 내용

- 1인당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과정에 따라 60~100% 지원(5년간 300만원 한도)
- 영업 및 판매관리 등 사업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훈련과정이 13,000여개 개설되어 있음
- ※ HRD-NET(www.hrd.go.kr)을 통해 훈련과정 확인 가능

10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고용보험료 환급지원) 안내

- 중소벤처기업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5년간 납입보험료의 20~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에 해당하는 자

(단위 : 원)

기준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월 보수액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월 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실업급여(월)	1,092,000	1,248,000	1,404,000	1,560,000	1,716,000	1,872,000	2,028,000
지원비율	50%		30%		20%		
지원액	20,475	23,400	15,795	17,550	12,870	14,040	15,210

개인정보제공 동의 여부 [동의 , 미동의]

- 본인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안내를 위해 아래의 정보를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제공받는 자)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이 용 목 적)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 (제공정보 항목) 성명,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휴대폰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
-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11 **자영업자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안내**

가.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이하 근로자 등)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한 경우 피보험자격 모두가 유지됩니다.

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자 등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새로 취득한 경우 자영업자 피보험자격과 근로자 등 피보험자격 모두가 되며, **이중취득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고용보험 보험관계 해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해지 신청 시 공단의 승인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영업자 피보험자격이 해지됩니다.

다. 이중취득·유지 관련 안내

- **이중취득·유지가 필요한 경우**
 - 자영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람이 배달대행 등 고용보험 의무가입이 필요한 업종에 **일시적으로 취업하더라도** 자영업자 고용보험관계의 변동을 걱정할 필요 없이 **계속해서 자영업자로서 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이중취득 유지 시 고려해야 하는 점**
 - 근로자 등 고용보험과 자영업자 고용보험 **양 쪽으로 고용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둘 중 어느 하나만 실업 또는 폐업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서 실업(폐업)**하여야 함
 - 자영업자로서 누적된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자 등으로서 **누적한 피보험 단위 기간과 합산되지 않으므로**, 자영업자 **피보험자로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1년 이상 납입**하여야 함

12 **기타 사항**

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후 보험가입 탈퇴 또는 보험료 체납으로 보험관계가 소멸되거나, 수급자격을 미충족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미 납부한 고용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 다만, 향후 3년 이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실업급여 수급 시 납입한 기간만큼 피보험기간 합산은 가능합니다.

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사업장이 휴업상태인 기간에도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후 고용보험에 재가입하려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지급종료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근로복지공단 ○○ 지사장 귀하